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류매각 손실액을 폐업 보상금 범위에 포함 등〉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48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피해어업인단체 추천 전문가 포함	3
2. 보상금에 어류매각 손실액을 포함	8
[참고자료]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27.

3. 회 부 일 : 2024.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89년 정부가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인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한 면허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함에 따라 어업인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가두리양식어업 폐업으로 양식생물이 집중 출하됨에 따라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이 막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당시에는 손실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당 내용은 추후 재심의하기로 논의한 후 법안을 의결하였음.

이와 관련, 최근 해양수산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양식생물의 집중 출하와 어가 하락의 인과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의 경우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및 손실보상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보상금 산정을 함에 있어 실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류매각 손실액을 가두리양식어업 폐업 보상금 범위에 포함시키고, 피해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손실보상 분야의 전문가를 손실보상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어업인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조 및 제8조).

Ⅲ. 검토의견

1.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피해어업인단체 추천 전문가 포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손실보상에 관하여 피해어업인 해당여부, 보상금 지급 결정 등을 심사하는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피해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손실보상 분야 전문가 2명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3항제3호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 ① (생략)	제5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 <u>17명</u> ----- -----.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차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손실보상 분야의 전문가

3. (생략) ④ ~ ⑥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우리나라는 과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해 내수면에서의 양식어업을 허용면서 1977년부터 1990년까지 358건의 면허를 발급하였으나, 이후 상수원의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1990년부터 일부 상수원보호구역을 시작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에 대한 신규면허 발급 및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하기 시작하였고, 1997년 국무총리 고시를 통해 전국 내수면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신규면허 및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하게 되었음.

이 과정에서 종래 내수면 가두리양식장을 경영하여 오던 어업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2020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피해어업인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음¹⁾.

□ 현행법은 이러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두고, 동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어업인 여부에 대한 심의와 보상금 지급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의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연장 불허 등 경과에 대해서는 [참고자료1] 참조

□ 그런데 동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현행법 규정이 해양수산부차관(위원장),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 손실보상업무과 관련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 및 손실보상 관련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²⁾하고 있어 보상금 산정 시 피해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가 추천한 손실보상 분야 전문가 2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보상금 산정 시 피해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 공정한 손실보상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1) 우선 손실보상대책위원회는 2024년 8월까지 신청이 완료된 전체 보상신청 194건에 대하여 2025년 1월까지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해 119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³⁾하였고, 남은 신청 건(75건)도 연내 심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므로, 개정안을 통해 손실

2)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제5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 ②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차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손실보상 업무와 관련 있는 임원
3. 해양수산부차관이 어업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보상결정 98건(약 212억원) / 미보상 21건(약 41억원) - 보상으로 결정된 총 98건(약212억원) 중, 53건(약133억원) 보상금 지급·공탁 완료 및 45건(약79억원) 지급 예정

보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여도 적용대상과 실제 보상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소지는 있음.

[2024 ~ 2025년 보상금 심의·지급 현황]

위원회 회차	결정 내역
1회(2024.6.26.)	13건, 약 34억원 보상
2회(2024.8.2.)	17건, 약 44억원 보상
3회(2024.9.30.)	30건, 약 73억원 보상
4회(2024.12.2.)	25건, 약 47억원 보상 및 1건, 약 4억원 미보상 결정
5회(2025.1.24.)	13건, 약 14억원 보상 및 20건, 약 94억원 미보상 결정
결정완료 건수	119건 심의완료(98건 보상결정, 21건 미보상 결정)
잔여 결정필요 건수	75건 / 총 194건

자료: 해양수산부

2) 다음으로, 현재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해양수산부의 국장(1명)과 각 관계 지자체의 공무원(8명), 변호사협회, 손해사정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통해 위촉된 민간위원 5명(변호사 1명, 손해사정사 2명, 감정평가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바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손실보상 담당 공무원 및 손실보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등 인적구성상 일정 부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개요, 운영 및 구성현황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1] 참조

[현 손실보상대책위원회 구성]

구 분	소속·지위 등	
위원장	해양수산부 차관	
당연직(9명)	해양수산부 어촌양식국장 강원도 해양수산국장 충남 해양수산국장 전남 해양수산국장 경남 해양수산국장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충북 농정국장 전북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경북 해양수산국장
위촉직(5명)	변호사(1명) 손해사정사(1명)	손해사정협회(1명) 감평법인(2명)

자료: 해양수산부

□ 관계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현재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심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손실보상금이 차질없이 지급되고 있어 법률 개정의 실효성이 적고, 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미 손실보상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의견임.

2. 보상금에 어류매각 손실액을 포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양식 수산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보상금)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u>종묘폐기비용 및 시설철거비</u> 등의 재산상 손실액으로 산정한다.	제8조(보상금) ① ----- ----- ----- <u>종묘폐기비용, 시설철거비 및 어류매각 손실액(양식수산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말한다)</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내용을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 잔존가액, 종묘폐기비용 및 시설철거비 등의 재산상 손실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은 동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이나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이와 관련하여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면허 연장불허 등의 조치가 있던 당시 가두리양식업의 폐업으로 양식생물이 단기간에 대량·집중 출하되면서 가격 하락에 따른 판매액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양식수산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피해어업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충실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현행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⁶⁾는 손실보상에 대한 보상금

5)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제8조(보상금)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 잔존가액, 종묘폐기비용 및 시설철거비 등의 재산상 손실액으로 산정한다.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6)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면허연장불허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보상대상자, 보상범위, 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신청기간은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고려하여 9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피해어업인(피해어업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어업인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보상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서 정본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 피해어업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의방법,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내수면 어업면허증 사본
2.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3. 폐업에 따른 시설물의 잔존가액·철거비 및 종묘폐기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항

지급을 신청할 때 폐업에 따른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행위와 손실 발생 간 인과관계 및 그 손실액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는 바,

가두리양식업 면허연장 불허로 인해 집중적인 대량 출하가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대량 출하로 인해 실제 어가 하락이 발생하였는지, 어가 하락이 발생하였다면 그 주된 원인이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입증되었거나 입증이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손실액 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이와 관련해서는 제20대 국회에서 동 법을 제정할 때, 그리고 제21대 국회에서 동 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제20대 국회에서 동 법이 제정될 당시 어가하락손실액으로 약 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⁷⁾하여 그 포함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시설물의

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다음 각 목의 서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어업인(이하 “피해어업인”이라 한다)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이하 “재산상속인”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가. 피해어업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피해어업인의 재산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속대표자 선정서(제6조의2 본문에 따라 상속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6. 그 밖에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사실 등 보상금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7) 보상금 소요재정 추계(2017)

구 분	폐업보상액	시설물 잔존가치	시설물 철거비	종묘폐기 비용	어가하락 손실액	계
금액	44,148	10,811	1,472	10,073	30,029	96,533

*자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잔존가액, 시설철거비 등과 달리 어가하락으로 인한 어가매각손실액은 입증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최종안에서는 제외하여 의결하였음.⁸⁾

- 이후 어가하락 손실액을 보상금액에 포함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윤재갑의원 대표발의, 제2113247호)에 대한 제21대 국회의 심사 시에도 손실액 산정이 어려운 점, 면허연장 불허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 사전 예고기간이 있어 출하를 계속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음⁹⁾.

□ 관련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어류매각 손실액 보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¹⁰⁾ 추진 결과 면허연장 불허와 어가하락 간 직접적인 인과성 입증이 곤란하고, 어가 하락이 손실액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의견임.

- 구체적으로 면허연장이 불가능해진 시점(1990년~)부터 면허기간 최종 만료(2004년)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고 사전 안내를 통해 양식물을 출하할 시간이 충분했으며, 서류상 증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임.¹¹⁾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2017.2.) 및 동 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8) 관련 논의 내용은 제356회 국회(임시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2018.2.27.) 참조

9) 관련 논의 내용은 제391회 국회(정기회) 농해수의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2021.12.8.) 참조

10) ‘내수면 가두리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양식수산물 가격하락 손실회 회 인과성 조사’

* (수행기간) 2023.2.16. ~ 9.15. (수행기관) 해양수산정책연구소

11) 그 밖에 기획재정부는 제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개정안(윤재갑의원안, 상동)에 대한 심사 시 어류매각 가격 결정 요인이 생산원가, 수요량, 자연재해 등 다양하고, 면허연장 불허와 어가 하락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 이상의 점을 종합할 때, 국가의 양식업면허 연장 불허 등 일련의 조치로 손실을 입게 된 피해어업인들에 대한 보상을 충실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해당 손실액에 대한 입증가능성, 어가 하락의 원인과 실제 손실액 발생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422

참고 1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연장 불허 등 경과

- '75.12.31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정, 가두리양식어업 면허(면허기간 10년)
 - * '77년부터 면허 처분을 시작으로 '90년까지 358건 면허처분
- '89.6.29 : **환경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원 영향 호소내 양식장 신규 면허 및 면허연장 수면사용 동의 지양 지시
 - * '89년초 수돗물 수질오염 사건 사회적 물의 계기
- '90.7.19 : **환경부에서** 상수원 특별대책 가두리양식장 신규입지 및 연장불허 고시(환경부 고시 제1990-16호)
- '97.5.9 : 국무총리(수질개선기획단) 가두리양식장 신규개발 및 면허기간 연장 불허 지시(제1997-10호)
- '97.6.3 : 해수부 국무총리 지시사항(제1997-10호) 지자체 시달
- '97.8.28 : 호소 수질관리법 제정, 상수원이용 호소 가두리양식장 면허금지('98. 3. 1 시행)
- '99.5.14 : 대법원 판결, '01. 3.21 : 헌재 합헌 결정
- '10.9.30 : 국회 입법 청원 접수(류근찬 외 9명)
- '11.9.28 : 제18대 국회 발의(최인기 외 28명)/폐기
- '12.10.19 : 제19대 국회 발의(최규성 외 28명)/폐기
- '16.11.22 : 제20대 국회 발의(이용호 외 13명)/'20.5.26. 제정, '21.5.26 시행
- '21.7.13 : 손실보상대책위원회 구성(15명)
 - * 차관(위원장), 당연직 9명(해수부지자체 국장급 9명), 위촉직 5명(손해사정·감정평가·변호사)
- '21.11.10~6.30. : 손실보상 실태조사 용역(전남대, 해양정책연구소 등 공동연구)
- '22.6.10 :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윤재갑) * 양식업 창업 우선지원
- '23.2.16~9.15. : 내수면 가두리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양식수산물 가격하락 손실피해 인과성 조사 용역
- '24.1.2 :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이양수) * 보상금 산정기준 및 방법 마련, 상속자에 지급 가능 규정 등
- '24.5.20~8.27 : 내수면가두리 손실보상 신청(총 194건 접수)

□ 손실보상대책위원회 개요

○ (구성) 15명 : 차관(위원장), 손실보상 담당공무원(9명), 민간위원(5명)

* 지자체(보상대상 8개 시·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위촉직 위원 : 변호사협회, 손해사정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을 통해 위촉

○ (기능) 손실보상 관련사항 심의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제5조

- ①피해어업인 해당 여부, ②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 및 보상금 지급 결정, ③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보상금 지급 결정 이의신청) 심의, ④그 밖에 위원장이 손실보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 (운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시행령 제2조제4항,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운영세칙)

- 위원장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 대행
- 위원 중 공무원이 부득이 참석 못할 경우 차 하급자 대리참석 가능(위원장 제출)
- 회의록은 비공개 원칙. 다만 대책위원회 의결시 공개 가능
- 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이해관계자 출석 의견 청취 등 가능
- 간사(소속공무원 중 위원장 지명)는 회의록 작성·관리 및 차기 회의에 보고

□ 손실보상대책위원회 구성

구 분	소 속 (직위)	주 요 경 력
위원장	해양수산부 (차관)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 해양수산부 대변인
당연직 (9명)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 경기도 과천시시장 - 경기도 경제실 미래산업과장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 강원도 관광정책과장 - 강원도 속초시 부시장
	충청북도 (농정국장)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장 - 충청북도 괴산군 부군수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장)	- 충청남도 공보관 -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 전라북도 군산시 부시장 - 전북도청 자치행정국장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	- 전남남도 친환경수산물과장 - 전라남도 수산가공팀장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장)	- 경상북도 동해안전락산업국장 -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	- 경상남도 통영시 부시장 - 경상남도 산업혁신국장
위촉직 (5명)	고웅 법률사무소 (변호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상근변호사 - 현덕규 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손해사정사협회 (사무국장)	- 유도드림손해사정 상무(어업피해 손해사정) - 전국손해사정사협회 사무국장
	최애손해사정 (대표)	- 한국손해사정사회 업무추진본부 의원 - 금융소비자연맹 재해보상지원센터 센터장
	삼창 감평법인 (이사)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위원
	(주)중앙감평법인 (부산경남지사)	- 하나감정평가법인 부산울산지사 - 중앙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이사